

|   |   |
|---|---|
| <p>○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續開를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 <p>企劃管理室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<br/>停會時間이 약속된 時間보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. 會議의 能率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一括上程을 要습니다만 項目別로 일단 案件을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. 委員여러분 6項에 이것은 改正條例案입니다. 改正條例案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? 한件 한件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(「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까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改正條例案은 일단 通過시켜 놓고, 制定條例案을 일단 質疑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<br/>異議가 없으시지요?</p> <p>(「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감사합니다.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 <hr/> <p>(參 照)<br/>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호중 “예산회계법시행령” 제95조의3 제3항”을 “예산회계법시행령”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.”</p> <p>附 則</p> <p>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</p> <hr/> <p>○委員長 朴尙東 그리고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?</p> <p>(「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네,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 <hr/> | <p>(參 照)<br/>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改正條例案</p> <p>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를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.</p> <p>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</p> <p>第1條(目的)이條例는 地方自治法第118條 및 地方財政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서울特別市豫算編成, 審議確定에 관한 節次를 規定 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 <p>第2條(豫算編成指針) 서울特別市長(以下 “市長”이라 한다)은 内務部長官이 示達하는 翌年度豫算編成指針에 依據 每前年度 9月 10日까지豫算要求機關에 細部豫算編成指針을 示達하여야 한다.</p> <p>第3條(預算의 要求 및 編成)①서울特別市 本廳各局長 및 事業所長은 每前年度 9月 30일까지 所管別 歲入歲出豫算要求書를 다음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豫算編成機關에 提出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事業計劃書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基本計劃書</li> <li>나. 所要資金 및 年度別 財源調達計劃</li> <li>다. 事業의 效果 分析</li> </ol> </li> <li>2. 事業別 優先順位 策定</li> <li>3. 地方財定法施行令 第30條 第5號내지 第11號에서 정하는 書類</li> </ol> <p>②市長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의 歲入歲出豫算, 繼續費, 明示移越費와 債務負擔行爲에 관한豫算을 編成한다. 특히, 事業豫算編成의 경우 中長期 財政運營計劃에 의거 可用財源範圍內에서 事業의 優先順位와 關聯效果를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編成하여야 한다.</p> <p>第4條(豫算案 提出등)①市長은 第3條에 의한豫算案을 每會計年度 開始 40日前까지 서울特別市議會(이하 “市議會”라 한다)에 提出하여야 한다.</p> <p>②市長은豫算案 提出後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그 내용을 修正하고자 할 때에는</p> |
|---|---|